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25 선고 2019가단482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연합회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19. 6. 11.

판결 선고2019. 6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8,009,6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. 7. 25.부터 1998. 7. 2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09. 3. 2.까지는 연 2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유영

별지